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 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도시녹화(이하 “녹화”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녹화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5조(녹화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벽 등 수목의 전지 수형다듬기 정비
2. 수벽 등 보식 및 이식 식재 지원
3. 고사목 처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4.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5.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6. 목재펠릿 제작 및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시로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일반주택용, 연구시설 등) (제6조 관련)

성 명		단 체 명 (시설명)	
주 소	성동구 로 (동, 번지)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수목정비 신청내역	○ 위치: 성동구 로 (동, 번지) - 수벽전지(길이 m, 면적 m ²) - 수형 만들기(높이: m, 직경 cm, 주) - 고사목 처리(높이: m, 직경 cm, 주) - 기 타()		
상기 본인(단체, 시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공동주택용) (제6조 관련)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로 (동, 번지)	세대수	세 대
연 락 처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소장)		
정 비 신 청 내 용				
위 치	유 형			희망날짜
	수벽전지 (길이 m, 면적 m ²)			
	수형만들기 (높이 m, 직경 cm, 주)			
	수벽고사목 (높이 m, 직경 cm, 주)			
	기 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